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31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제19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는 제외한다)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무상교환, 품질보증, 이행보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서비스보증계약

제13조제1항 중 "컴퓨터통신"을 "인터넷"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구분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계리(計理)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분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40조제3항제3호 중 "컴퓨터통신"을 "인터넷"으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2.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

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식

제4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담당부서, 연락처 및 보험금 청구 방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

가.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나.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다. 보험계약의 청약 시 청약서 부본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 방법

마.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

- 3. 보험계약 승낙거절 단계 : 승낙 거절 사유
- 5.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 단계

- 가. 보험금 지급일
- 나. 보험금 지급 내역
- 다. 손해사정서 제공에 관한 사항
- 라.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 마.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42조의2제3항제4호나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다목, 라목,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 다.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절차
- 라.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유한 다른 보험계약 현황 사. 그 밖에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를 "제3항제4호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 은 조 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나.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

제43조제6항 중 "컴퓨터통신"을 "인터넷"으로, "「전자서명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2.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
 제43조제9항제1호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
 자서명"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
 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나. 그 밖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년 이하인 경우"를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

제44조제1항제1호 중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을 "보험료 및 보험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을 "예정이자율"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목적"을 "종목"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제3호라목 중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자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거나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모집합투자기구에 편입"을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면서 자산을 이전"으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한"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담보의 평가액 및 채무보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급"을 "지급 관련 담보 제공 또는 보험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채무보증"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 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이고 만기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채권 또는 우선주(이하 "신종자본증 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5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사채"를 "사채 및 제3항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채권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호에"를 "호 및 제3항에"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4호 중 "투자자문업"을 "보험에 관한 금융리서치 업무, 투자자문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제14호의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소유하는 업무제59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영업 개시 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의 제목 중 "구분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제64조제1항 중 "계리하고"를 "회계처리하고"로 한다.

제71조제3항 중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 및 "분기별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각각 "금융위원회" 및 "보험상품 판매 목록"으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금융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7조제1항 중 "보험회사"를 "법 제176조제4항에 따라 매년(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은 5년마다) 보험회사"로 하고, "보험종목별·위험별"을 "보험 종목별·위험별"로, "신고한 순보험요율(이하 "참조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를 "신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련 법령·제도의 변경 또는 보험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위험률의 산출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그 주기를 단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87조제2항 중 "참조순보험요율 시행예정일 30일"을 "그 시행예정일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 보험요율(이하 "참조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조순보험요율 신고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단, 불완전 판매 비율이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6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263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보험상품) ① 「보험업	제1조의2(보험상품) ①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
	(제19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는 제
	외한다)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
	리, 무상교환, 품질보증, 이행
	보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후 관리에 관한 서비스보증계
	<u>약</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①	제13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	
는 보험회사"란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	
상을 전화, 우편, <u>컴퓨터통신</u> 등	인터넷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이하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겸영업무 · 부수업무의 구 | 제17조(겸영업무 · 부수업무의 회 분계리) ① 법 제11조의3에 따 계처리) ① -----라 보험회사가 제16조제1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부수 업무(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해당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 천분의 1 또는 10억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 는 업무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 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 산 · 부채 및 수익 · 비용을 보험 업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 ----- 회계처리하여야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분계리의 세 ② ----- 회계처리--부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다.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①・② (생 략) 영업기준 등) ①·② (현행과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같음)

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방법은 제1항제3 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만 사용 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전화, 우편, <u>컴퓨터통신</u> 등의 통신수 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

④ ~ ⑫ (생 략)

-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제 등) ① (생 략)
 - ② 법 제9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u><신 설</u>>

<신 설>

③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

1.•2. (현행과 같음)
3
<u>인터넷</u>
④ ~ ⑫ (현행과 같음)
]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u>하는 방법</u> .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
2.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 본
인의 의사 전달의 안정성과 신
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일반보험계약자
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
여 입증하는 방식
3

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 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의 경우 일반보험계약 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 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 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 는 모사전송 등으로 중요 사항 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보험계약 체결 단계
 가. ~ 라. (생 략)
 마.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 절 사유

<신 설>

<u>제3호부터 제5호까지</u>
<u>의</u>
<u>.</u>
1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u>
담당부서, 연락처 및 보험금
청구 방법
2. 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
가.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
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
다는 사실
나.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
<u>나.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u>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신 설>

 2. 보험금 청구 단계

 <신 설>

<u>가</u>. (생 략) <신 설> <신 설>

<u>나</u>. (생 략) <신 설>

<신 설>

는 사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 · 방법

<u>마.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u> <u>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u>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보험계약 승낙거절 단계 : 승 낙 거절 사유

4. -----

<u>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u> 류

<u>나</u>. (현행 가목과 같음) <u>다</u>.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절차

라.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 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마. (현행 나목과 같음)

 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유한 다른 보험계약 현황

사. 그 밖에 보험계약자 또는

3. 보험금 지급 단계: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④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4 항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가 보 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 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 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 단 계 가. 보험금 지급일 나. 보험금 지급 내역 다. 손해사정서 제공에 관한 사항 라.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마.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 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사유 (4) ------ 제3항제4호 각 목의 -----

- 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 <삭 제>
- 2. 보험금 지급 내역
- 3.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 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사유
- (5) (생략)
-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 항)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동의를 한 ------
 - 1.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
 - 2.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 는 자가 소속되거나 통신수단 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위탁보험회사"라 한다)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실 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 집 당시 보험계약이 유효한 피 보험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 3.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 | <삭 제>

<삭 제> <삭 제>

(5) (현행과 같음)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 항) ① -----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삭 제>

<삭 제>

- 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을 중개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
- 4. 위탁보험회사, 보험설계사, <삭 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의 활 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의 해당 개인
- ②·③ (생 략)
- ④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_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모집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 이버몰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 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 를 부여받은 후 이용할 것
- 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 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 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 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받 은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

②·③ (현행과 같음)
4
<u><</u> 삭 제>
2
다으 가 모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

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 <u><신 설></u>

<신 설>

3. (생략)

- ⑤ (생략)
- 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 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한다.

<u><신 설></u>

<신 설>

- ⑦・⑧ (생 략)
- 9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9 -----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나.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
의 의사 전달의 안전성과 신
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
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
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
인하여 입증하는 방법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6
<u>인터넷</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방법</u>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2.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
⑦·⑧ (현행과 같음)

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 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 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 다.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이 경우 본인 확인은 <u>「전자서</u> 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 인전자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2. · 3. (생략)

① (생략)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제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다만,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1
<u>다음 각</u>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나. 그 밖에 안정성과 신뢰성
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
 2.·3.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u> </u>
<u>1년 이하인 경우 또는</u>
인터넷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

- 1. · 2. (생략)
- ②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 3. (생 략) <신 설>

③ (생략)

-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 저 고지사항) ①법 제97조제3항제2 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 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u>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u> <u>입주기 및 납입기간</u>
 - 2. <u>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u> 내용
 -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 4.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4. 예정 이자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2.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정성과 신뢰성
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
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
증하는 방법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
고지사항) ①
1. 보험료 및 보험기간
2. 주요 보장 내용
<삭 제>

- 5. 보험 목적
-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 ② (생략)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저

- ①·② (생 략)
-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2. (생략)
- 3.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 에 편입하거나 일반계정의 자 산을 특별계정에 편입하는 행 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 다.

가. ~ 다. (생 략)

라.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 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자집합투자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에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2. (현행과 같음)
3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ㅁ귀ᅯᅱᅱ무귀기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면서 자산을 이전

5. ---- 종목

기구에 편입하거나 자집합투 자기구의 자산을 모집합투자 기구에 편입하는 행위

마. (생략)

4. • 5. (생략)

④ (생 략)

- 제57조의2(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저 금지의 예외) ① (생 략)
 - ②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채무보증 한도액이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3 이내일 것
 - 2. (생략)
 - 3. 보험금 <u>지급</u> 채무에 대한 채 무보증일 것
 - 4. 보험회사가 <u>채무보증</u>을 하려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마.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세57조의2(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
1. 제공하는 담보의 평가액 및
채무보증
2. (현행과 같음)
3 지급 관련 담보 제
공 또는 보험금 지급
4 담보를 제공하
거나 채무보증

소유할 것(외국 정부에서 최대 소유 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한도까지 소유하는 것을 말한 다)

③ • ④ (생 략)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① ·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① ·

② (생략)

<신 설>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의 발행한도는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사채 또는 어 음의 발행조건 등 제2항 각 호 에 따른 자금차입 방법에 관하 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① 법 제1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① -----

-	 	 	 		 	 	
_	 	 	 	. .	 	 	
_	 	 	 		 	 	 _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 사는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이 고 만기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요건에 부합하는 채권 또는 우선주(이하 "신종자본증권"이 라 한다)를 발행하여 자금을 차 입할 수 있다.
 - (4) ----- 사채 및 제3항에 따른 신종자본증권 (채권에 한한다)----
 - 및 제3항에 -----

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13. (생략)

14. 외국에서 하는 보험업, 보험 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보험 대리업무, <u>투자자문업</u>, 투자일 임업, 집합투자업 또는 부동산 업

15. ~ 22. (생 략) <u><신 설></u>

② ~ ⑤ (생 략)

제59조의2(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저 법 제116조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제5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서 신설>

1. ~ 13. (현행과 같음)
14
보험에 관한 금융리
서치 업무, 투자자문업
15. ~ 22. (현행과 같음)
23. 제14호의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소유하는 업무
② ~ ⑤ (현행과 같음)
59조의2(자회사와의 금지행위)
<u>다</u>
만, 보험회사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영업 개시 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무형의 자
산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64조(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 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익과 무배당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분하여 계리 한고, 배당보험계약 이익의 계약자지분 중 일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배당보험계약의 손실 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①·②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제3 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 사로 하여금 <u>매분기 종료일의</u>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분 기별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신 설>

제64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계처리하고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금융위원회</u>
<u>보</u> 험
<u> 상품 판매 목록</u>
<u>.</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8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금융위원회는 협의회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 위험별 특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이하 "참조순보험 요율"이라 한다)을 보험회사가 |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 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 히는 경우

검증) ① --------- 법 제176조제4항에 따라 매년(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 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 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 은 5년마다) 보험회사-- 보험 종목별·위험별 -- 신고----

> ----. 다만, 관련 법령·제도 의 변경 또는 보험환경의 급격 한 변화 등으로 위험률의 산출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그 주기를 단축하여 신고할 수 있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u>참조순</u> 보험요율 시행예정일 30일 전까 지 하여야 한다.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은 3년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신 설>

<u>다.</u>

② ----- <u>그 시</u> 행예정일 3개월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이하 "참조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할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조순보험요율 신고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1]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관련)

1.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구분	등록요건
생명보험설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모집에 관
	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
	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
	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라.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
	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손해보험설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모집에 관
	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
	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
	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라.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
	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3보험설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 라. 개인인 제3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비고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년으로 한다.

2.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구분		등록요건
개인보험	생명보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리점	대리점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대
		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손해보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리점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대
		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I	제3보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리점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대
		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 관계 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보험	생명보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대리점	대리점	가.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
		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
		춘 법인
	손해보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대리점	가.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
		의 금융기관 및 <u>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종손해보험대</u>
		<u>리점</u> 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
		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제3보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대리점	가.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
		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
		춘 법인

비고

개인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2년으로 한다.

3.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구	분	등록요건
개인보험	생명보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개사	중개사	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생명보험중개사 시험 에 합격한 사람
		나.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 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손해보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개사	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보험중개사 시험 에 합격한 사람
		나.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 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3보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개사	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제3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개인인 제3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
		한 사람
		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업무에 종사한 사람
		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
		람
법인보험	생명보험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생명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
중개사	중개사	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손해보험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손해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
	중개사	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제3보험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제3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
	중개사	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비고

개인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교육 이수 또는 시험 합격 후 2년으로 한다.

[별지 2]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제1항 관련)

- 1.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 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 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법령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된 기초서류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2)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
-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3]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제71조의5 관련)

-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 제한에 위배되지 않을 것
- 2.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적립할 것
-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